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5년 7월 8 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(주)
(영문명) Eastspring Asset Management Korea Co, Ltd.
(홈페이지) <https://www.eastspringinvestments.co.kr/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, 22층(여의도동, 서울 국제금융 센터)
(전 화) 02-2126-3644

대 표 이 사 : 박 천 웅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경영지원본부 본부장
(성 명) 금 정 희 (전 화)02-2126-3551

작 성 자 : (직 책) 경영지원팀 팀장
(성 명) 목 수 정 (전 화)02-2126-3644

제 출 이 유 :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, 「동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 및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6-7호)

최대주주 변경

1. 변경내용	변경전	최대주주명	프루덴셜 코퍼레이션 홀딩스 리미티드
		소유주식수(주)	보통주 6,540,000 주
		소유비율(%)	100%
	변경후	최대주주명	알씨엠금융인프라제이호사모투자 합자회사
		소유주식수(주)	보통주 6,540,000 주
		소유비율(%)	100%
2. 변경사유			지분매각
3. 지분인수목적			- 인수인은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지분인수 후 경영참여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제고하고, 국내 자산운용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수를 추진함 - 향후 적절한 시점에 대상회사 보유주식을 적격한 인수인에게 전량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나,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음
- 인수자금 조달방법			- PEF의 출자하는 사원들로부터 전액 자금을 조달하여 인수자금을 조달 - 차입금 조달은 없음
- 인수후 임원 선·해임 계획			- 기타비상무이사 2명을 선임하여 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할 예정
4. 변경일자			2025년 7월 7일
5. 변경확인일자			2025년 7월 7일
6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	- 본 지분인수거래는 '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'에 의하여,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2025년 6월 11일 획득하였음 - 알씨엠금융인프라제이호사모투자합자회사는 자본시장법상 PEF로서 본 지분인수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- 본 건 인수직후 회사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음 : 자산 680억원 / 자기자본 680억원

【세부변경내역】

성명(법인)명	관계	변경전		변경후		비고
		주식수(주)	지분율(%)	주식수(주)	지분율(%)	
프루덴셜 코퍼레이션 홀딩스 리미티드	변경 전 최대주주	6,540,000 주	100%	-	-	
알씨엠금융인프라제이호사모투자 합자회사	변경 후 최대주주	-	-	6,540,000 주	100%	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.
- 주2) “최대주주명”란에는 최대주주 본인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수를 기재한다.
- 주3) “소유주식수”는 변경전.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의 소유주식수를 각각 기재한다. 이 경우 「상법」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및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(신탁계약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포함)은 소유주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.
- 주4) “소유비율”은 변경전.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의 소유주식수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(「상법」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)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한다.
- 주5)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등으로 인하여 종전 2대주주등이 추가적인 지분취득 없이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“3. 인수목적(인수자금 조달방법, 인수후 임원 선.해임 계획 포함)”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관련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.
- 주6)【세부변경내역】은 변경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 및 변경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의 지분변동내역을 모두 기재한다. 이 경우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지분변동내역 산정에서 제외한다.
- 주7) “관계”는 변경전 최대주주, 변경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, 변경후 최대주주 또는 변경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, 변경전.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“비고”란에 최대주주와의 구체적인 관계를 기재한다.

예시) 최대주주 홍길동의 배우자

- 주8) 변경후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당해 최대주주의 재무상태(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, 자산총액, 부채총액, 자본총액 등) 기타 변경후 최대주주 관련사항 등을 기재한다.
- 주9) 상기사항 외의 최대주주변경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